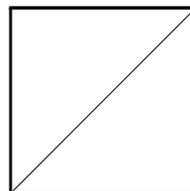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1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한국주택금융공사  
2021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 1. 의결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예산 편성 · 심의 기본방향

-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202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
  - 총인건비는 예산지침에 따라 0.9% 이내에서 증액 편성
  - 경상경비는 예산지침에 따라 동결이 원칙이나 법정 필요경비, 인력 증원 등 필수 증액소요를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년 추정 세전이익 3% 이내에서 편성
- 사업경비는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소요를 배분하고, 자본예산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을 감안하여 감액 반영

### 예산안

- 정원 : '21년 총 804명(공사계정 409명, 기금계정 395명)

구분(명)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계
계	15	52	131	233	373	804
공사계정	9	32	67	119	182	409

□ 세부항목별 예산안 내역

- 총인건비 : 417억원 ('20년 414억원 대비 0.9% 증가)
- 경상경비 : 84억원 ('20년 74억원 대비 13.2% 증가)
- 사내복지기금 출연 : 45억원 ('20년 35억원 대비 28.6% 증가)
- 퇴직급여충당금 : 78억원 ('20년 79억원 대비 1.6% 감소)
- 정원외직원 인건비 : 47억원 ('20년 41억원 대비 14.2% 증가)
  - \*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대체인력 및 청년인턴 확대 운영 등 반영
- 기타 경비예산 : 567억원 ('20년 498억원 대비 13.8% 증가)
  - \*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자회사 처우개선 등 반영
- 자본예산 : 518억원 ('20년 667억원 대비 22.3% 감소)
  - \*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반영
- 예비비 : 35억원 ('20년 47억원 대비 25.6% 감소)
  - \* 인력증원 인건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산 등을 예비비로 편성

<'21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산 내역(안)>

(단위: 억원)

구분	'20년 예산액(A)	'21년 예산액(B)			증감률 (B/A)
		요청액	심의결과	요청액대비 증감액	
총인건비	414	417	417	-	0.9
경상경비	74	94	84	△10	13.2
사내복지기금 출연	35	45	45	-	28.6
퇴직급여충당금	79	78	78	-	△1.6
정원외직원 인건비	41	47	47	-	14.2
기타 경비예산	498	608	567	△41	13.8
자본예산	667	586	518	△68	△22.3
예비비	47	35	35	-	△25.6
계	1,855	1,910	1,791	△119	△3.5

< 별지 : 2021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산총칙(안) >

#### 4. 참고사항(관계법규)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  
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  
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  
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별지 > 2021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산총칙(안)

제1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예산은 공사 고유회계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라 한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라 한다) 규모를 반영하여 통합운영 하되, 계정별 정원·업무비중 등에 따라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리한다.

제2조 공사 고유회계의 2021년도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수 익	비 용	순이익
42,896	40,266	2,630

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억원)

자 산	부 채	자 본
1,609,655	1,573,108	36,547

제3조 관리업무비, 예비비 및 자본예산의 관·항별 금액 및 집행임원 연봉은 “별표 1, 2”와 같으며 비목별 금액은 사장이 정한다.

제4조 사장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지상황을 감안하여 조직·인원 및 보수체계의 개선,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 내부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금리 변동 등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는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집행이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액 승인범위 내에서 집행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집행상 관·항·목간의 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항간의 전용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목간의 전용은 사장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인건비, 경상경비 중 급여성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의 증액 전용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봉제 방식의 변경 등 보수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항·목간 전용은 사장이 결정하되,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는 경영예산심의회의 경영관리 효율화 제도개선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퇴직금·세금과공과금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지출에 대하여 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장은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내역을 작성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의 성과급과 인력증원, 정·현원차, 통상임금, 자회사설립 출자금 예비비의 전용은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9조**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업무량의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상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직급별 상향조정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1조** (1)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주신보·주연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는 이를 공사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공사는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별표 1) 관리업무비, 예비비 및 자본예산의 관·항별 금액

(단위: 백만원)

과 목	2021년도 예산	
	고유회계	
○ 관리업무비	123,782	
- 인 건 비	53,005	
- 경 비	70,777	
(경상경비)	14,046	
(사업경비)	56,731	
○ 예비비	3,497	
- 성과급예비비	1,988	
- 인력증원예비비	809	
- 일반예비비	700	
○ 자본예산	51,808	
- 유무형자산	27,450	
- 기타자산	24,408	
합 계	179,087	

(별표 2) 임원 연봉

(단위: 백만원)

구분	기본연봉	성과급
사장	219	130
감사	175	105
부사장	175	105
상임이사(1인)	154	91

(별표 3) 2021년도 공사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계
계	15	52	131	233	373	804
고유계정	9	32	67	119	182	409
주신보계정	5	13	42	86	135	281
주연보계정	1	7	22	28	56	114

\* 2021년 임금피크 별도정원 제외

(별표 4)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심의기준에 따른 재분류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예산 (A)	'21년 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b>I. 총인건비</b>	41,357	41,732	375	0.9
1. 인건비	40,206	40,570	364	0.9
(임원)	692	698	6	0.9
(직원)	35,627	35,950	323	0.9
(무기계약직)	3,887	3,922	35	0.9
2. 급여성 복리후생비	1,151	1,162	11	0.9
<b>II. 경상경비</b>	7,405	8,384	979	13.2
1. 복리후생비(비급여)	478	489	11	2.4
2. 업무추진비	115	109	△6	△5.2
3. 교육훈련비	1,526	1,645	119	7.8
4. 국외여비	218	218	-	-
5. 기타 경상경비	5,068	5,923	855	16.9
<b>III.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b>	3,500	4,500	1,000	28.6
<b>IV. 퇴직급여충당금</b>	7,895	7,768	△127	△1.6
<b>V. 정원외직원 인건비</b>	4,087	4,667	580	14.2
<b>VI. 기타 경비예산</b>	49,862	56,731	6,869	13.8
<b>VII. 자본예산</b>	66,719	51,808	△14,911	△22.3
1. 직원사택 관련	6,800	6,800	-	-
2. 대학생학자금 관련	148	148	-	-
3. 기타 자본예산	59,771	44,860	△14,911	△24.9
<b>VIII. 예비비</b>	4,701	3,497	△1,204	△25.6
1. 인력증원 예비비	2,698	809	△1,889	△70.0
2.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	-	-	-
3. 성과급 예비비	1,713	1,988	275	16.1
4. 통상임금 예비비	90	-	-	-
5. 일반 예비비	200	700	500	250.0
<b>IX. 총예산</b>	<b>185,526</b>	<b>179,087</b>	<b>△6,439</b>	<b>△3.5</b>
(경상경비 및 기타 경비예산)	(57,267)	(65,115)	(7,848)	(13.9)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연 락 처	02-2100-2523